##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시범사업」 2025년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기술지원 모집공고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시범사업」에서는 천연물 소재와 관련된 기업, 농업법인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외 수요 농가와 기업에서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 강워테크노파크

# 1 지원사업개요

- 사업목적: 천연물 표준화 지원이 필요한 기업, 농업법인의 기술지원을 통해 시장진출 지원 및 강원 천연물 산업 육성
- 사업명: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어브 시범사업 표준화 기술서비스 지원
- 지원 기간: 협약일 ~ 2025.11월말
  -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u>최종선정 기업수, 지원기간, 내용, 비용</u> 등 조정 가능
- 기술지원 기관: KIST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 서울대학교 GBST

# 2 지원대상 및 내용

### ■ 지원 대상

- o 국내 천연물소재 관련 **기업**
- **도내** 천연물소재 지원이 필요한 생산자 단체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4조)
  - ※ 타 광역시도 소재 생산자 단체 경우,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지원 여부 확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제4조 생산자 단체의 범위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 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u>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u>으로서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 지원 내용

- 천연물소재의 맞춤형 원재료/원료 표준화 기술지원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지원의 수준/범위, 기간, 비용 등 결정

지원분야	지원내용
1. 원재료 생산 표준화 기술지원	○ 기원종 감별 및 동정, 순도(동일성, 균일성) 검정 ○ 경제성 기반 종자 및 영양번식체 적합성 검토 ○ 원재료 재배기술 표준화 지원 ○ 원재료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지원 ○ 원재료 품종 선발 지원 ○ 원재료 생산기술 보급 및 교육 지원
2. 원재료 규격관리 표준화 기술지원	○ 원재료 가공에 따른 세척, 건조, 저장의 체계 확립 ○ 경제성 기반 세척, 건조, 저장을 위한 필수 조건 확립 ○ 표준화 효율성을 위한 체계 확립
3. 맞춤형 원료 표준화 지원	<ul> <li>○ 원료의 조추출물 조제 조건 수립</li> <li>○ 조추출물에서 용매 분획, 컬럼 분획 등을 이용한 분획물 조제 조건 확립</li> <li>○ 기능성, 특이성, 대표성, 안정성, 분석가능성 평가를 통한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설정</li> <li>○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에 따른 규격 설정</li> </ul>
4. 원료 기능성 평가 지원	○ 세포기반 천연물 효능 유효성 평가 ○ 항암, 항염, 당뇨, 알레르기, 면역증강, 항산화 분야 항목에서의 유효성 및 동 등성 평가 ○ 천연성분의 in vitro 생리활성 평가 ○ 비임상 유효성 평가 관련 실험 설계 및 자문
5. 제조공정 표준화 컨설팅	○원료 제조를 위한 추출법 (용매, 온도, 시간, 건조 방법 등) 표준화 ○농축, 건조 및 제제화 공정 표준화 ○기준규격 설정 (안정성, 섭취용량, 유해물질 등)
6. 분석·검증	○ 유해물질 분석 및 검인증 연계 지원- 중금속, 미생물, 잔류용매,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등 ○ 기능/지표성분의 안정성 분석 및 검인증 연계 지원 ○ 소재별 성분 규명 서비스 ○ 소재별 기능성분, 유효성분 함량 분석 서비스 ○ CRO/GLP 기관 연계 효능, 전임상, 임상 프로세스 지원 연계 서비스 ○ 소재 개발 프로세스 컨설팅 ○ 원재료별 유효·지표성분 표준 검출법 개발 서비스 ○ 기타 안전성 분석·인증 지원

#### ■ 지원 규모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내외 지원이 원칙이나,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중액 가능
  - ※ 증액가능 범위는 최대 5천만원 내외이며, 총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상	지원금	민간 부담금(현금+현물 포함)	비고
기업, 농업법인	75%	25%	VAT 제외

<sup>※</sup> 타 시도기업은 "기업이전의향서" 제출 시 지원 가능

<sup>※</sup> 신청대상자가 설정가능한 민간부담금의 현금 비율은 10% ~60%까지 산정 가능하며, 선정평가위원회는 <신청내용+현금비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필요시 대면평가 시 현금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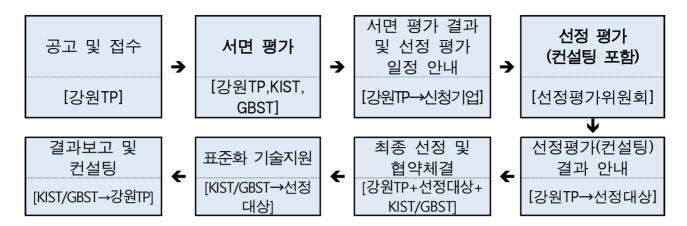
## ■ 추진 일정(예정) \*해당 일정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추진일정	추진절차	추진내용	
24. 12. 31(화). ~ 25. 1. 31(音).	사업공고 및 접수	○ 모집공고, 신청서 제출·접수	
	<b>—</b>		
~ 2. 7(금).	서면 평가	<ul> <li>서면 평가([서식1]참조)</li> <li>신청서 검토: 평가위원 사전평가(서면)</li> <li>※ 서면검토 시 본 공고내용과 무관하거나 지원내용이 극히 불량, 모호한 경우 발표평가 제외(탈락)</li> <li>제출 서류 중 신청서 외 기본서류 강원TP 검토</li> </ul>	
	•	* 필요시, 서면평가 기간 중 평가위원들이 연락할 수 있음(Q&A 등)	
~ 2. 11(화).	서면평가 결과 안내	○ 서면평가 결과 및 내용 ○ 대면평가 일정 안내 등	
	•		
2. 17(월). ~ 2. 18(화).	선정 평가 (대면발표)	<ul> <li>발표평가 및 컨설팅: 표준화 지원 필요성 및 범위, 내용 등 발표.</li> <li>평가결과, 지원범위, 소요기간, 비용 등 확정</li> </ul>	
	<b>•</b>	* 선정 평가 대상수에 따라 당일 혹은 1박 2일 일정이 될 수 있음	
~ 2. 21(금).	선정평가 결과 및 협약체결 안내	○ 결과 통보 및 표준화 기술지원 협약체결, 기타 행정사항 안내(TP→기업)	
	Ψ		
2. 24(월). ~ 2. 28(금).	협약체결	<ul> <li>표준화 기술지원 협약체결(매칭비용 선입금 포함)</li> <li>※ 협약체결방식 별도 안내 예정: TP↔수요대상 또는 서비스지원기관↔수요대상 등</li> <li>※ 협약체결 과정에서 매칭비용(현금부담금) 납입 안내 사항(금액, 납입일시 등) <u>미 준수 시</u> 선정 제외</li> </ul>	
	•		
협약일 ~`25. 11.30. (9개월)	기술지원	○ 표준화 기술지원 진행	
Ψ			
협약종료일~ 12일 이내 (12.12일 이내)	진행결과보고 및 컨설팅*	<ul><li>표준화 기술지원 결과 보고</li><li>※ 당해년 완료 가능한 지원내용에 한해서 결과보고 진행</li></ul>	

\* 결과보고 및 컨설팅은 평가 개념보다는 표준화 기술지원과정에서의 매뉴얼 구축, 표준화 애로사항 도출, 표준화 결과 공유 등에 초점을 두고 진행

## 4 평가 절차 및 기준

■ 공고 및 접수 \* (재)강원테크노파크 및 참여기관 등 홈페이지 공고



#### ■ 서면 평가

- (강원TP)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누락, 허위 기재 사실 여부 확인, 부적합 대상기업, 사업 목적의 적합성, 기타 서류 등 검토 \*강원 도내 기업 또는 지방이전의향서 제출 서류 등
- (KIST & GBST) 제출한 기술지원신청서(서식1) 및 (필요시) 유·무선 인터뷰를 통하여 사업 필요성, 목표의 명확성, 지원 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
- 0 선정대상 제외
  - 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사업내용(서식1)이 본 사업의 목적, 표준화 지원 내용,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처분 및 사업비 환수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타 기관에서 기 지원된 기업지원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는 신청기업 등에 개별 통보함
  - 신청서에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및 지원협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 가능

#### ■ 선정평가(대면 발표 및 컨설팅)

- 관련 전문가(7~10인)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대면 평가 원칙)
  - \* 대면평가/컨설팅을 통해 기술지원 가능유무, 지원가능 범위, 소요기간, 비용 등 확정
  - \* 대면평가 시, 발표 10분 내외, 질의응답&컨설팅 20분 내외로 진행 예정(단, 선정 평가 안내 시 변동될 수 있음)
- 평가기준(평가점수 70점 이상 기준)

항목	내용	배점
	o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10
표준화 지원 필요성 (30점)	o 지원대상의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10
(30 🖹)	o 표준화지원 대상의 차별성, 독창성 등	10
표준화 지원에 따른	o 표준화지원에 따른 타깃시장(글로벌 포함) 진출 가능성	20
성과창출 가능성 (40점)	o 표준화지원에 따른 조기 상용화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20
보유역량 및 잠재역량(20점)	o 신청기업(관)의 사업화(인프라 확보 등) 역량 o 신청기업(관)의 표준화지원 후 활용 역량	20
기대효과/파급효과 (10점)	o 매출증대,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10

#### ■ 선정평가 결과 안내

- 선정 결과 및 협약체결 의향 안내(강원TP → 선정 대상)
  - 표준화 기술지원 여부, 표준화 기술지원 수준/범위, 비용, 소요 기간, 협약서 등
  - \* 차후라도 부적합 사유발생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기술지원 확정)

- 선정대상자는 기술지원 범위, 비용, 소요 기간, 제출 서류 등 평가결과 검토
   후, 협약체결 여부 및 관련 자료 회신(선정 대상→강원TP)
- 이후, 협약 체결 문서 회신(강원TP→선정 대상)
  - ※ 협약체결 과정에서 매칭비용(현금부담금) 납입 안내 사항(금액, 납입일시 등) <u>미 준수 시</u> 선정 제외

### ■ 표준화 기술지원 진행, 결과보고 및 컨설팅

- 표준화 기술지원 기간 : 협약일 ~ 2025. 11. 30.
- 당해년 진행완료된 내용 결과보고 및 컨설팅 진행(25년 12월12일 이전)

# 5 신청기간 및 방법

#### ■ 공고 및 신청기간

○ 모집 : '24. 12. 31(화). ~ '25. 1. 31(금). / 18시까지

#### ■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이메일 접수 후 원본제출** 必(우편 또는 방문)
  - ※ 온라인 제출 : (재)강원테크노파크 한재현 jay82@gwtp.or.kr
  - ※ 오프라인 제출 : 강원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두개비산로 199-9 강원테크노파크

(<u>서류발송일</u>이 접수마감일과 동일한 경우 오프라인 제출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됨. 이외의 경우, 미제출로 간주되어 탈락)

#### ㅇ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명	이메일	전화번호	문의
강원테크노파크	한재현	jay82@gwtp.or.kr	033-435-8468	접수 문의
KIST 천연물연구소	이욱빈	wblee@kist.re.kr	033-650-3656	표준화 기술지원
서울대 GBST	서장균	jangseo@snu.ac.kr	033-339-5877	표준화 기술지원

##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제출부수
	1.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기술지원 신청서 ([서식1]참조)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해당시) 사본 ※ 영농조합법인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	각 1부
	3.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식2]참조)	1부
필 수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3]참조)	1부
	5.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신규창업으로 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기업은 부가가치세과 표준증명원 제출(국세청 홈택스 출력 가능)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이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eg.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원 등)	각 1부
	6. 기업 이전 의향서 ([서식4]참조)	1부
<u>해당시</u>	7.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 직접수출은 (한국무역협회 발급), 간접수출은 (utradehub 발급)	각 1부
선정시	8. 협약체결 요청 공문	1부